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회운영 규정 일부 개정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7월 12일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장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규정 제104호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회운영 규정 일부 개정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결사항)에 제1항에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

제5조(회의소집)에 제3항에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과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주무관청 및 이사과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개정

제6조(의결방법) 제1항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의 규정에 대하여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찬성으로 의결하여 화성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중 “제1호부터 제5호”를 “제1호부터 제6호”로 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고 경기도 허가(승인)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